# 2018년 제3회 원규심의위원회 심의규칙

## ❑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(안) : 원안의결

ㅇ 근무상황관리에 ‘부원장’ 신설 및 위임전결규칙 개정

- (현행) 연구책임자 → (개정) 연구책임자·팀장
- (현행) 실·본부장 → (개정) 부서장

※ 위임전결규칙 〈별표〉의 ‘실·본부장’, ‘연구책임자’ 일괄 개정

ㅇ 기간제연구원 운영 폐지로 ‘기간제연구원’은 삭제

## ❑ 명예연구위원 운영규칙 제정(안) : 원안의결

ㅇ 명예연구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근거 마련(제3조, 제4조)

-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, 원장 또는 부서장 추천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

ㅇ 명예연구위원의 위촉기간 근거 마련(제5조)

- 최소 2년 이상, 5년 이내 위촉 가능

ㅇ 명예연구위원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(제7조)

- 무보수 원칙(고용계약 없음), 연구원의 정보제공 및 기타 비품 제공

붙임 1. 위임전결규칙 신구조문대조표
2. 명예연구위원 운영규칙

**[붙임 1] 위임전결규칙**

# 신구조문대조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
〈별표〉

위 임 전 결 규 칙

1.공 통 사 항

| 부서별 | 단위업무 | 세 부 사 항 | 결재권자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연구책임자 | 실·본부장 | 부원장 | 원 장 |
| 공 통 | 복무 | 1. 근무상황관리 | | | | |
| | | 가.실 · 본부장 | | | | ○ |
| | | 나.팀장, 정규 연구직원, 기간제 연구원 | | ○ | | |
| | | 다.그 외 직원 | ○ | | | |
| | | 2.~3. (생략) | | | | |

2.~3. (생략)

〈별표〉

위 임 전 결 규 칙

1.공 통 사 항

| 부서별 | 단위업무 | 세 부 사 항 | 결재권자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연구책임자·팀장 | 부서장 | 부원장 | 원 장 |
| 공 통 | 복무 | 1. 근무상황관리 | | | | |
| | | 가.부원장 | | | | ○ |
| | | 나.부서장 | | | ○ | |
| | | 다.팀장, 정규 연구직 | | ○ | | |
| | | 라.그 외 직원 | ○ | | | |
| | | 2.~3. (현행과 같음) | | | | |

2.~3. (현행과 같음)

[붙임 2 명예연구위원 운영규칙

# 명예연구위원 운영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위원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자로서 퇴직 후에도 연구원 내·외부에서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수행, 연구자문, 정책자문, 사회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명예연구위원은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.

**제4조(위촉절차)** 명예연구위원은 원장 또는 연구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(위촉기간)** 명예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,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촉해지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타 기관에 상근(주 3회 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)으로 취업할 때
2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3. 본인이 원할 경우
4. 기타 사유로 명예연구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연구원에서 판단할 경우

**제7조(예우 등)** ① 명예연구위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르는 고용계약 관계로 보지 아니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원장은 명예연구위원에 대해 연구원의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